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AU WINGS 간호시뮬레이션센터규정 | 규정번호 | 4-11-16 |
| | | 제정일자 | 2021.07.01. |
| | | 개정일자 | 2025.12.01. |
| | | 개정차수 | 2차 |
| | | 소관부서 | 산학협력단 (AU WINGS 간호 시뮬레이션센터) |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AU WINGS 간호시뮬레이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업무 및 기능) 센터는 간호시뮬레이션센터의 운영계획 수립, 운영, 평가, 관련 규정 제·개정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·관리하며,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간호학과와 협력하여 운영·지원한다.

1. 간호시뮬레이션센터의 운영계획 수립
2. 간호시뮬레이션센터의 운영 및 평가
3. 간호시뮬레이션센터 및 실습기자재 관리
4. 간호시뮬레이션센터 안전사항 점검 및 관리
5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

제2장 조 직

제3조(구성) 센터는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 1명
2. 실습조교(오퍼레이터) 1명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대학 간호학과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는 총장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임명한다.

제5조(실습조교 수행업무) 실습조교(오퍼레이터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보조
2. 간호시뮬레이션센터와 기자재 관리 및 운용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의 전임 교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간호시뮬레이션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

3. 예산편성 및 질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.

제9조(회의 소집 및 회의)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삭제 <2023.03.01.>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지침)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장 교육위원회

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센터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선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의 전임교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.

1. 센터의 프로그램 시행계획 수립

2.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

3. 센터의 프로그램 평가 및 질 관리

4. 기타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12조(위원회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13조(회의 소집 및 회의) ① 교육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교육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14조(운영지침)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 시행한 사업 선정 결과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 시행한 조직 개편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